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정	2003.10. 9.	규칙 제416호	2007. 2.28.	규칙 제487호
	2010. 3. 5.	규칙 제520호	2010. 9. 6.	규칙 제533호
	2011. 2.14.	규칙 제550호	2011. 9. 8.	규칙 제570호
	2011.11.15.	규칙 제572호	2012. 1. 2.	규칙 제589호
	2016. 4. 5.	규칙 제705호	2017. 8.31.	규정 제747호
	2018.12.17.	규정 제778호	2019. 5. 8.	규정 제782호
	2019. 8.28.	규정 제801호	2019.11.22.	규정 제805호
	2021. 9.13.	규정 제860호	2024. 2.22.	규정 제9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의 4종으로 그 종별과 해당 학과(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위논문의 구분) 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삭제>

2. 석사과정은 둘째 학기에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다만, 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첫째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3. 박사과정은 첫째 학기에 전공 교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되, 전임교원의 정년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원생으로 제한한다.

1. 석사학위 과정

- 가. 체육학을 전공하는 본교 전임교원
-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타 대학 체육학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원
-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임교원과 전공 관련 전문가. 다만, 이 경우에는 원생의 연구주제를 본교 전임교원의 채용과목 및 강의과목의 범위로 제한한다.
- 라. <삭제>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 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타 대학 체육학전공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③ 논문지도교수가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담당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1.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은 대학원별 각 3명, 총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 지도원생이

1명일 경우 석사 10명, 박사 지도원생이 없을 경우 석사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3.>

2. 입학당시 박사과정 입학생이 3명이고 전공교수가 1명일 경우 박사 3명, 석사는 대학원간 구분 없이 6명 이내로 한다.
3. 특별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과정 원생은 박사과정 둘째 학기에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동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19.11.22., 2021.9.13.>
 1.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2.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체육학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신설 2021.9.13.>

제4조의2(석사학위 무논문 신청) ① 특수대학원의 무논문 선택과정을 이수하려는 원생은 2차 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8.28., 개정 2021.9.13.>

- ② 특수대학원 논문제출 및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자는 3학기 또는 4학기 중 1회에 한하여 논문 또는 무논문 선택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13., 개정 2024.2.22.>

제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원생과 지도교수의 정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할 원생은 지도교수변경원(사유서첨부)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도교수 변경원은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1학기 전, 박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2학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도교수의 정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6조(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자격) ① 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1.9.13.>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 이상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 ②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1. 박사과정 중 책임연구자(교신연구자 포함)로서 100% 이상 연구논문 계재(예정)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1인 연구논문 : 100%
- 나. 2인 연구논문 : 70%
- 다. 3인 연구논문 : 50%
- 라. 4인 이상 연구논문 : 30%

2. 박사과정 중 책임연구자(교신연구자 포함)로서 지도교수와 2인이 공동 연구한 논문 계재(예정) 실적

- ③ 지도교수를 변경한 원생의 학위논문계획서 발표는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동일 전공)은 2학기 후로 연기된다.

제7조(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논문연구계획서는 학위논문제출 1학기 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출 당해 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연구 진행 시 제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학위논문을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4.2.22.>

제8조(논문연구계획서의 공개발표 및 심사) ①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에 논문연구계획 및 연구 결과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에 대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소속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1. 석사 및 박사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다만, 이 경우에는 논문연구계획서 관련 영역의 전공교수와 논문제목 관련 모학문 또는 인접학문의 전공교수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삭제>

③ 논문연구계획서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이어야 한다.

④ 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에서 중대한 오류로 지적되거나 불합격한 자는 재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① <삭제>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2.22.>

1. 일반대학원 : 석·박사학위 수료학점 이수 (예정)자,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합격자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종합시험,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합격자

③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2.>

1. 논문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필수)

2. 국제학술대회 참가 1회 (필수) <개정 2024.2.22.>

3. 전공 관련 학술연구 세미나 참석

④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과 실적을 충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2.22.>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2.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연구윤리교육 이수 확인서

⑥ 제13조제2항의 기간을 초과한 자와 재입학 자 중 퇴학 또는 제적된 지 4년이 경과한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과 외국인 원생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4.2.22.>

⑦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실비에 상당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제10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로 외국어시험 중 본교가 주관하는 필답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② 석·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외국어시험 평가의 합격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과 외국인 원생에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24.2.22.>

③ 삭제 <2024.2.22.>

④ 외국어시험 중 필답고사는 학기별로 실시하며, 출제위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여 출제한다.

⑤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11.22.>

제11조(종합시험) ① 석·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

- 가.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 나.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9.8.28.>

2. 박사학위 과정

- 가.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 나.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석·박사 통합과정은 45학점이상)

③ 종합시험 평가방법은 필답고사로 하며,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0분의 60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불합격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④ 시험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된 3과목 이상의 전공과목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선정하고,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하며, 시험 시행학기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은 반드시 본인이 이수하였거나, 이수증인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⑥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과목담당 교수(강사포함)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22.>

제12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석·박사학위논문은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하며 그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체제 및 규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위청구논문작성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위논문제출 횟수 및 허용기간) ① <삭제>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복무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완성된 학위논문 제출) ① 석·박사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을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하드커버 3부와 PDF 형식의 파일을 소정의 기일까지 학술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2024.2.22.>

② 학위논문 제출자는 제1항에 따른 학위논문제출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8.28., 2024.2.22.>

③ 학위가 수여된 이후에는 학위논문을 수정 또는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9.5.8.>

제2장 학사학위

제15조(학사학위수여 등) ① 학사학위는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취득자 또는 가능한 자로서 졸업심사(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에 합격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졸업증서를, 연계전공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삭제>

제16조(논문제출) <삭제>

제17조(심사위원) <삭제>

제18조(졸업심사) ① <삭제>

② 졸업심사(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또는 실적심사는 학과장 주관하에 실시하며 그 판정은 급(S) 또는 낙(U)으로 표기한다.

③ 제2항의 졸업심사 또는 실적심사에 대한 평가는 논문심사방식에 준하며, 실기는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석사학위

제19조(석사학위수여) 석사학위는 최종 인준 받은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단,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19.8.28.>

제20조(논문의 제출) 석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원고 3부

제21조 (심사위원회구성 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둔다. 단,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분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소정기일 내에 중심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술시험은 중심에 실시한다.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 석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박사학위

제25조(박사학위수여) 박사학위는 제9조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중 심사위원의 최종 인준을 받은 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제26조(논문의 제출)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원고 5부

제27조(심사위원구성 등) ①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명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며, 심사위원 중 3명 이상은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 제외) 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2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한다. 외부인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원장이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 본심(3회), 중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과 본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 보완하여 소정 기일 내에 중심을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수정 · 보완하여 차후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 초심(연구계획서 심사)은 공개발표로 하여야 하며, 공개발표 시 외부교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당해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32조(수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술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체육,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4.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33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명예이학박사학위 또는 명예체육학박사학위로 한다.

제34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과반수 찬성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35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제416호, 2003. 10.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2항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시험 중 수업에 의한 평가는 2004학년도 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학위수여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 규정,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 한국체육대학교교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제435호, 2004. 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1호, 2006.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7호, 2007.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0호, 2010.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원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33호, 2010.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50호, 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위종류 및 종별은 종전의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부 칙(제570호, 2011. 9.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2호, 201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89호, 2012.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2항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05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4조제2항제2호 가목 및 제9조제4항제1호~제3호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47호, 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위 종류 및 종별은 종전의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부 칙(제778호, 2018.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9조제6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82호, 2019. 5.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01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4조의1과 제19조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05호, 2019. 11. 2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60호, 2021. 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0호, 2024.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9.13.>

학위종류	학위종별	해당학과(부)	후드색
학사학위	체육학학사	체육학과,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전공) 사회체육학부(사회체육전공, 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건강복지학부(레저스포츠전공, 건강관리 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노인체육복지전공) 무용학과, 생활무용학과, 특수체육교육과, 태권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검정
석사학위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생활체육전공, 건강관리전공, 스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글로벌스포츠리더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스포츠경기심판전공, 스포츠안전관리전공 스포츠AI·빅데이터전공, 스포츠공학전공	초록
	교육학석사	학교체육교육전공	청색
박사학위	이학박사	건강교육학전공, 운동생리학전공, 스포츠심리학전공, 운동역학전공, 스포츠교육학전공, 체육사학전공, 스포츠사회학전공, 체육철학전공, 체육측정평가학전공, 특수체육학전공, 스포츠산업·경영학전공, 스포츠의학전공, 스포츠코칭전공	노랑

* 박사학위 후드의 V선은 흰색, 소매의 삼단은 검정색(금색테두리 등 금지)으로 함.

[별표 2] <개정 2021.9.13.>

외국어시험 평가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 종류	주관	합격 기준(등급/점수)
석사과정	TOEFL		만점의 40%이상 취득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60%이상 취득
박사과정	TOEFL		만점의 50%이상 취득(입학고사 성적 포함)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70%이상 취득

* 재학 중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 제출자와 제10조제5항 이수확인서 제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함.

[별지 제1호서식]

학사 제 호

졸업증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학부·학과(전공 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육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1호의2서식]

학사 제 호

졸업증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학부·학과(전공)와 ()학부·학과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육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1호의3서식]

학사 제 호

졸업증서

성명()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교()학부·학과(전공)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육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13.>

석제 호

학위기(석사)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9. 8. 28., 2021.9.13.>

석제 호

학위기(석사)

성명()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장 학위 성명(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인)

학위번호 :

[별지 제3호서식]

박제 호

학위 기(박사)

성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이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4호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박사)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나라 스포츠 국제 경기력 향상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었음은 물론, 스포츠 외교활동을 통하여 한국을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